##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이철규·박성민·박준태

권성동 • 이인선 • 구자근

송언석 • 유상범 • 조지연

임이자 · 김대식 · 김장겸

김민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 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 정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 어 암추를 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광물 정보의보관·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
	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
	질·광물 정보의 수집·보관·
	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
	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
	<u> 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u>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
	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96조(권한의 <u>위임</u> ) 이 법에 따	ŀ
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u> </u>
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	<u>}</u>
역시장 · <u>도지사</u> · 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
있다.	

<u><신 설></u>

제96조(권한의 <u>위임·위탁</u> ) <u>①</u>
<u>특별자치시장·</u>
도지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u>수 있다.</u>